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제 1169 호】

2015년 04월 10일 (금)

선람	기 관 의 장

회 람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22호 —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5-104호 —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0

공 고

국방부 공고 제2015-73호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 19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 - 22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업무추진 현실과 위임법규와의 일치 등을 통해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시행(2014.11.21.)에 따른 도서정가제(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구청장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 정비

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재 설치 장소(어린이집, 목욕장·식품접객업소, 주택단지, 어린이공원)를 관리·감독하는 기관과 일치되도록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4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 출 처 : 고양시장 (인적자원담당관)

-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 전 화 : 인적자원담당관 조직교육팀 (031-8075-239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각 위임 소관부서별 세부 내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동청소년과의 위임사무명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위생정책과의 위임사무명란 중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목욕장업 및 식품접객업소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문화예술과의 위임사무명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판사 및 인쇄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2. 신고필증 반납 및 보고 3. 과태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주택과의 위임사무명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 명령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제16조
	2. 사고조사 등	· 같은 법 제22조
	3.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23조
	4.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1조

녹지과의 위임사무명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 명령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제16조
	2. 사고조사 등	· 같은 법 제22조
	3.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23조
	4.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1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인적자원담당관
입안자	과 장 성 명	인적자원담당관 명 재 성
	팀 장 성 명	조직교육팀장 정 재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근 영 (031-8075-239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아동청소년과〕

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 략)	1.~5. (생 략)	· (생 략)
2. (생 략)	1.~6. (생 략)	· (생 략)
3. (생 략)	1.~4. (생 략)	· (생 략)
<신 설>		

개 정 안

[별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아동청소년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4.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2. 사고조사 등	· 같은 법 제22조
	3.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23조
	4.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1조

현 행			개 정 안		
[위생정책과]			[위생정책과]		
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 략)	1.~4. (생 략)	· (생 략)	1.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생 략)	1.~4. (생 략)	· (생 략)	2.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 (생 략)	1.~5. (생 략)	· (생 략)	3.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4. (생 략)	1.~5. (생 략)	· (생 략)	4.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5. (생 략)	1. (생 략)	· (생 략)	5.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6. (생 략)	1. (생 략)	· (생 략)	6.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7. (생 략)	1.~2. (생 략)	· (생 략)	7.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8. (생 략)	1. (생 략)	· (생 략)	8.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9. (생 략)	1. (생 략)	· (생 략)	9.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0. (생 략)	1. (생 략)	·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1. (생 략)	1. (생 략)	·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 (생 략)	·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 (생 략)	·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2. (생 략)	·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신 설>			15. 목욕장업 및 식품접객업소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2. 사고조사 등	· 같은 법 제22조
				3.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23조
				4.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1조

현 행

［문화예술과］

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 략)	1.~5. (생 략)	· (생 략)
2.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 (생 략)
	2. 신고필증 반납	· (생 략)
	3. (생 략)	· (생 략)
3. (생 략)	1.~14. (생 략)	· (생 략)
4. (생 략)	1.~9. (생 략)	· (생 략)
5. (생 략)	1.~10. (생 략)	· (생 략)

［주택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 략)	1.~2. (생 략)	· (생 략)
<신 설>		

개 정 안

［문화예술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출판사 및 인쇄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 (현행과 같음)
	2. 신고필증 반납 및 보고	·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1.~1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주택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2. 사고조사 등	· 같은 법 제22조
	3.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23조
	4.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1조

현 행	개 정 안

［녹지과］

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 략)	1.~6. (생 략)	·(생 략)
2. (생 략)	1.~9. (생 략)	·(생 략)
3. (생 략)	1.~7. (생 략)	·(생 략)
<신 설>		

［녹지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2. 사고조사 등	· 같은 법 제22조
	3.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23조
	4.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1조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960-16번지 일원의 일산1-2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고 양 시 장

1. 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가. 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사업시행방식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단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비고
기정	일산 Ⅰ-2구역	일산동 960-16번지 일원	17,100	주택 재개발사업	50 이하	230 이하	15층 이하	2단계 (2010년)	-
변경	일산 Ⅰ-2구역	일산동 960-16번지 일원	17,738	주택 재개발사업	50 이하	230 이하	18층 이하	2단계 (2010년)	-

나.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역	변 경 사 유
정비예정구역 면적 변경 기정 : 17,100㎡ ↓ (증 638㎡) 변경 : 17,738㎡	·정비예정구역 지정시 구적면적에 의한 오차 정정 및 현황여건 변화에 따른 정형화를 도모하고, 미개설도로 개설에 따른 정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역면적 변경
건축물 최고높이의 변경 기정 : 15층 ↓ (증 3층) 변경 : 18층	·용도지역의 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건축계획(안)을 반영하고 지형 및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최고층수 변경

2. 정비구역 결정조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결정 조서

지정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 설	주택재개발사업	일산 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일산동 960-16번지 일원	17,738	

• 정비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위치	내용	결정 사유
신 설	①	일산동 960-16번지 일원	· 면 적 : 17,73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정비구역 신설

3. 정비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738	-	17,738	100.0	-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7,738	감)17,738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증)17,738	17,738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일산동 960-16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738	230%이하	·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7,738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4,927	27.8	
	도 로	1,511	8.5	
	보행자도로	231	1.3	
	문화공원	3,185	18.0	
획 지	소 계	12,811	72.2	
	획지1(공동주택)	12,811	72.2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1	25~35	보조 간선도로	1,893	대로1-10 대화동3-10	대로1-3 중산동1678	일반 도로	-	경고제147호 74-05-16	
변경	대로	3	11	25~35	보조 간선도로	1,893	대로1-10 대화동3-10	대로1-3 중산동167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152	10~13	국지도로	1,310	대3-11 일산동973-83	대1-4 일산동1653	일반 도로	-	경고제359호 88-12-03	
변경	소로	1	152	10~17	국지도로	1,310	대3-11 일산동973-83	대1-4 일산동165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493	4	국지도로	55	대3-11 일산동972-70	소로1-152 일산동972-23	전용 도로	-	-	
폐지	소로	2	212	8	국지도로	105	대3-11 일산동958-6	소1-152 일산동960-1	일반 도로	-	고고제73호 93-11-04	
폐지	소로	2	213	8	국지도로	55	대3-11 일산동972-70	소로1-152 일산동972-23	일반 도로	-	고고제73호 93-11-04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1	대로 3-11	· 노선 변경 - 폭원 : 25~35m - 구역내 연장 : 160m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차선확보로 도시계획도로 확폭
소로 1-152	소로 1-152	· 노선 변경 및 일부구간 폭원 확장 - 폭원 : 10~17m - 구역내 연장 : 285m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보·차도 및 버스베이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폭
소로 3-493	소로 3-493	· 노선 신설 - 폭원 : 4m - 연장 : 55m	·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2-212	-	· 노선 폐지 - 폭원 : 8m - 연장 : 105m	정비계획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 폐지
소로 2-213	-	· 노선 폐지 - 폭원 : 15m - 연장 : 55m	정비계획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 폐지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357	문화공원	문화공원	일산 서구 일산동 972-12	-	증)3,185	3,185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57	문화공원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3,185㎡	주택재개발구역 및 주변지역 도시민의 휴식교육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원 신설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기 준	계 획	비 고
근린생활시설	■ 세대당 6㎡이하, 다만, 500㎡미만인 경우 500㎡로 할 수 있음	856㎡	50조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	80㎡	28조
주민공동시설	■ 300세대 이상의 경우, 50+(세대수−300)×0.1㎡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가능	100㎡	55조
경로당	■ 100세대 이상의 경우, 40+(세대수−150)×0.1㎡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가능	60㎡	55조
어린이집	■ 300세대 이상의 경우, 21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단지 안에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70%이상인 경우 − 노인주택단지, 외국인주택단지 등 불필요한 경우	100㎡	55조
작은도서관	■ 300세대이상의 경우 33㎡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60㎡	55조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경우 − 3㎡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이상 운동장 확보, 그 안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농구장, 또는 핸드볼장 1개소이상 설치	330.58㎡	53조
어린이놀이터	■ 100세대 미만인 경우, 매 세대당 3㎡(시·군지역은 2㎡)이상 ■ 1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시·군지역은 200㎡)에 100세 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씩(시·군지역은 0.7㎡)이상	600㎡	46조
휴게시설	■ 300~500세대인 경우, 1개소 이상, 500세대이상의 경우,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1개소	29조

마.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일산동 960−16 번지 일원	허용용도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
		용 적 률	·219.03% 이하	−
		높 이	·최고층수 : 18층	−
		배 치	·공동주택 주동의 길이는 4호 연립규모이하 내지 50m 이하로 배치(임대건축물제외)	−
		형 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변화 있는 입면계획을 권장하여 특색 있는 단지조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가능토록 건축물 배치	−
		색 채	·건축물 색채는 기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3가지 색으로 분류 ·주조색은 전체면적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보조색은 전체면적의 25% 미만으로 하여야 함 ·동번호, 벽면로고 등은 강조색을 사용 · 사용할 수 있는 색은 건축부위별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일부구간 6m 지정	−

바.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1) 환경보전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요 약)
우수유출	·투수가 가능한 포장재료를 이용하여 시공토록 하여 우수유출량 저하 계획
비오톱 변화	·계획대상지의 비오톱 유형은 주거지 비오톱이며, 사업시행후 현재의 비오톱 유형 및 보전가치의 변동이 최소화 하도록 대책 마련
기존수목 활용계획	·추후 재개발 정비사업시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 및 수종은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2) 재난방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요 약)	비 고
화재	·지구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
수해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지역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교통	·재해시 소방도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사업 시행시	○ 대기질, 소음 및 진동대책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수립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제한, 사업지구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함	-
	○ 보행안전대책 ·사업지구 외곽으로 공사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써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후 사업시행토록 함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 (07:00~09:00, 17:00~19:00) ·사업지 주변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는 우선 확보토록 함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토록 함 ·공사장비 및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보행안전 도모	-
사업 완료시	·사업지구 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종을 선정・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토록 함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 등과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학생 보행안전을 확보토록 함	-

아. 세입자 주거대책

1) 임대주택의 공급

○사업대상지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도모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확보비율은 「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관련규정에서 제시한 규정을 준수

- 총 건설세대수의 17%

(단,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

2) 이주대책비의 지원

○ 「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서 제시한 이주대책비 지원 기준에 따름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종류는 이주대책비와 영업보상비로 구분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영업 손실과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임

○이주대책비의 보상

-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당해 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다만,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주거이전비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자.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구 분	계 획	비 고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구역 결정고시 후 4년 이내	-

차.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구 분	계 획	비 고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

카.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구역명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일산Ⅰ-2주택 재개발구역	17,738	22	-	-	22	-	

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동일	-

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	1BL	12,811	일산서구 일산동 960-16번지 일원	12,81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전체계획 세대수	임대주택 계획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정비구역 내	-	-	321세대	55세대(17.13%)	40㎡이하	-

거.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화 재	·지구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본 건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특정장소로서 건물의 특성상 재난 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 우려가 크며, 이에 대비한 피난 설비의 배치, 소화 설비와 구조 설비등 방재에 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함으로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토록 함 ·소화방재 계획 - 화재 시 연시의 확산 및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연설비 설치 - R형 방재 시스템을 이용한 초기화재 감지 및 소화대책을 수립 - 피난 계단을 이용한 안전지대로의 피난이 용이하도록 피난 시스템 구축 - 종합 방재 시스템을 이용한 초기 호재 방지 및 소화대책 수립 - 화재 시 자동식 소화설비의 즉각적인 가동을 위한 운영대책 수립	-
수 해	· 검토하여 지구주변지역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 계획 수립 ·공사중 발생되는 토사 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배수구역별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유출수 중 토사를 침전시킨 후 상등수만 방류토록 계획 ·절토 및 성토면의 활동과 사면안정에 대한 사면처리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절성토 사면에 적정구배를 적용하여 사면의 유실 및 붕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 ·강우시 공사중에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지작업시 절성토 사면의 안정을 기하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사면 상하부에 측구 등 배수 시설을 설치 ·사업시 시행은 우기를 피하여 절·성토 작업을 시행	-

너.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계획

1) 일산 Ⅰ-2구역 주택수급 계획

◦ 대상지 현황 세대수는 94세대며, 금회 정비사업으로 계획된 세대수는 321세대로써 227세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 황		계 획		증 감	
세대수	인 구	세대수	인 구	세대수	인 구
94	266	321	854	증) 227	증) 588

※ 「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세대당 2.66인

※ 현황 세대수 및 인구는 2012.1 기준 일산1동주민센터로부터 회신된 인구현황임

※ 본 계획세대수는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

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비 고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공동주택 및 문화공원에 설치하고 항상 모니터링 함	-

러. ,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계도서 참조

- 고양시청 도시재생과(주소 : 고양시 덕양구 시청로 10 제1별관 4층, 전화 : 031-8075-3180)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 제2015 - 7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유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산53-2번지 등 6필지
○ 면 적 : 2,049㎡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용도구역또는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049	2,049						
1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산53-2	임야	793	793	잡종지	보전관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81, 103동 305호 (범박동, 현대홈타운 1단지)	최명식	-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0가길 20-7 (구로동)	최보순	-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86번가길 36 (계수동)	최보식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77-2	답	268	268	잡종지	생산관리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3		777-3	답	4	4	잡종지	생산관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 유 자		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460-12	공장용지	508	508	잡종지	계획관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18, 104동 401호 (옥수동, 옥수삼성아파트)	권성욱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308, 1702호 (금촌동, 금촌타워상가아파트)	권성환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 (금촌지점)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1동 201-7	김영재		
5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667-2	전	327	327	잡종지	계획관리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 도내리 661	심응섭		
6		667-3	전	149	149	잡종지	생산관리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